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0>

제2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관리지침을 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2008.2.29>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에 한한다) : 8인 이내

2.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9인 이내

③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0]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국회사무처 및 법원행정처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정보화촉진 기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을 말한다) 또는 지식정보자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⑤위원장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무위원회) ①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지식정보자원관리평가실무위원회

2. 삭제 <2005.3.30>

3. 지식정보자원공동이용실무위원회

②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2.29>

③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각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각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중 소관사항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 무의하는 사항을 위원회 개최 전에 검토·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조 (수당) 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8조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한다. <개정 2005.3.30,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예산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0, 2008.2.29>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0, 2008.2.29>

제9조 (전담기관의 업무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2. 지식정보자원관리 정책의 개발에 대한 지원
 3.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연계 및 통합업무에 대한 지원
 4.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5. 디지털화된 지식정보자원이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접근·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호 및 번호 부여 업무의 지원
 6. 기타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하여 위원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 또는 위탁하는 업무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기관에 업무를 요청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을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정의 목적 및 사유
 2. 지정하고자 하는 지식정보자원의 종류 및 내용
 3. 지식정보자원의 관리현황 및 관리계획
 4. 기타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련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당해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2008.2.29>
-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이하"지정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0>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2008.2.29>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지식정보자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기술적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디지털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1조의2 (지정지식정보자원의 제공) 지정지식정보자원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인쇄물 출력 또는 전산매체수록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5.3.30]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3조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촉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민이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9, 2005.3.30>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이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통한 지식정보자원의 연계 및 통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전담기관 또는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의 평가) ①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전문,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제3항·제4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99> 부터 <105> 까지 생략